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. 6. 13 선고 2022가단2029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4. 25.

판 결 선 고 2023. 6. 13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2. 2. 8.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2022. 2. 8.자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C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(이하 ‘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D조합(이하 ‘D’이라 한다)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.

약정일	보증금액	보증기간	대출금
2013. 2. 5.	59,600,000원	2013. 2. 5.~2028. 2. 5.	59,600,000원
2014. 1. 27.	45,000,000원	2014. 1. 27.~2024. 1. 27.	50,000,000원
2016. 1. 29.	19,800,000원	2016. 1. 29.~2018. 1. 29.	22,000,000원
2016. 2. 16.	187,000,000원	2016. 2. 16.~2018. 2. 16.	220,000,000원
2022. 1. 28.	6,300,000원	2022. 1. 28.~2024. 1. 28.	7,000,000원
2018. 11. 16.	13,500,000원	2018. 11. 16.~2020. 11. 16.	15,000,000원
2018. 12. 24.	45,000,000원	2018. 12. 24.~2020. 12. 24.	50,000,000원
2019. 9. 26.	63,750,000원	2019. 9. 26.~2029. 9. 26.	75,000,000원
2019. 12. 31.	105,400,000원	2019. 12. 31.~2029. 12. 31.	124,000,000원
2018. 2. 1.	6,300,000원	2018. 2. 1.~2020. 2. 1.	7,000,000원

나. 원고는 2022. 5. 31.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.

다.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차전44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2. 6. 13. ‘C은 원고에게 512,298,245원 및 그중 511,069,627원에 대하여 2022. 6. 8.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은 2022. 7. 1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라. C은 2022. 2. 8.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어선(이하 ‘이 사건 어선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,000,000원, 채권자 피고, 채무자 C으로 한 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저당권설정등록(이하 ‘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’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마.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.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, 2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과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

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,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의 주장

C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E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보험계약약관대출로 7,630,000원을 대출받았다. C은 피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, C의 남편 F은 피고로부터 2021. 4. 23. 3,000,000원을 차용하였다. C은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선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.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는바, 선의의 수익자이다.

나.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). 앞서 인정한 사실,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,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원고가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

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,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(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5다47106, 47113, 47120 판결 등 참조).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).

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어선을 다수의 채권자 중 피고에게만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을 제2 내지 6, 8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, C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E 주식회사와 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, 7,630,000원의 약관대출을 받은 사실, 피고는 2021. 4. 23. C의 배우자 F에게 3,000,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, 즉 ① C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, 피고는 C의 배우자 F에게 돈을 대여해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피고는 C이 운영하던 가두리전복양식장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약관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피고는 F에게 3,000,000원을 지급한 이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, C과 F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 사실만으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)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경준

별지

목 록

어선번호 :

어선의 종류 : 동력선

어선의 명칭 :

선적함 : 완도읍

선체재질 : FRP

총톤수 : 1.65톤

기관외 종류·마력 및 대수 : 가솔린선외기 기관 150.000 마력 1대

추진기의 종류와 수 : 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

끝.

